#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5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 박대출・이종배・강승규

권영세 · 신성범 · 박정하

고동진 · 김태호 · 이성권

박충권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·경찰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 에 의거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

하지만 실제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, 위험 직무순직유족연금, 사망조위금 등은 '사망 후 추서된 계급'이 아닌 '사 망 당시 계급'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름뿐인 예우라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.

이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 등이 유족연금 등 지급 시,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고자 함(안 제10조제1항 단서).

#### 법률 제 호

#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무원이 사망한 후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조의4제1항제5호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9조의3제1항제5호, 「경찰공무원법」 제19조, 「소방공무원법」 제17조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준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급여액 산정의 기초) ①	제10조(급여액 산정의 기초) ①
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	
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	
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	
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제1항	
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(이	
하 "기준소득월액"이라 한다)을	
기초로 한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<u>다만, 공무원이</u>
	<u>사망한 후 「국가공무원법」</u>
	제40조의4제1항제5호, 「지방공
	무원법」 제39조의3제1항제5호,
	「경찰공무원법」 제19조, 「소
	방공무원법」 제17조에 따라
	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
	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
	로 산정한다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